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채용 공고

-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항만 지원, 선사 경영개선, 유관산업과의 상생 등 해운·항만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우리나라 해운·항만 산업의 재건을 위한 선도 기관으로 이끌어 주실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I.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직급	채용분야	배치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능직 (사원)	운전·총무	인사총무부	1명	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서무·총무	재무회계부	1명	
		기획조정실	1명	
		사업전략부	1명	

□ 근로조건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장소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해운대 아이파크)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 소멸)
- 복리후생 :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사항은 공사 내규에 따름
- 보수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배치부서	계약기간	보수(연간)
운전·총무	인사총무부	채용예정일 ~ '23. 4. 28.	33,577,500원
서무·총무	재무회계부	채용예정일 ~ '23. 5. 31.	31,340,430원
	기획조정실	채용예정일 ~ '22. 12. 31.	
	사업전략부	채용예정일 ~ '23. 1. 31.	

* 채용예정일 : 2022. 6. 20. 예정

** 보수(연간) : 당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경평성과급 외 별도 추가 인상 없으며, 해당 보수는 'B등급'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

II.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붙임1), (붙임2)

- 성별, 학력 등 별도제한 없으며, 하기내역 모두 충족 시 응시가능

가.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가 가능한 자
 사. 채용분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붙임2), (붙임3)

직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동시 충족)
기능직 (사원)	운전·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분야와 관련하여 총 환산경력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임원차량(수행기사) 운전경력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서무·총무	· 총 환산경력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2) 총 환산경력 : 공사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른 산정 후 변환경력

<예시> 경력환산기준>

	근무처	총 경력	환산율 (경력인정비율)	환산경력	자격기준
예 시	공공기관/공무원	1년	100%	1년	충족
	민간기업 (법인에서 전일근무)	1년	90%	약 11개월	미충족

관련서류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입사지원서 접수 시 기준) (붙임4)

○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가점 부여)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서 채용인원 4명 미만인 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

Ⅲ.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채용공고기간 : 2022. 4. 27. [수] ~ 5. 12. [목] 16: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s://kobc202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원서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제출서류 목록 (해당자에 한함)**

항 목	제 출부수	대 상자
자격(면허)증	1부(사본)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증빙서류 ①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②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③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④ 경력단절여성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원본)	
운전경력증명서(운전·총무 분야 필수제출) - 공고일 이후 민원포털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휴학, 제적) 증명서		
교육사항 증빙서류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교육사항 증빙서류 - 직업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이수시간 표기 必)	1부(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확인 必)	1부(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제외)

나.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 이후에라도 합격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우 제출 전 공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통한 근무기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차이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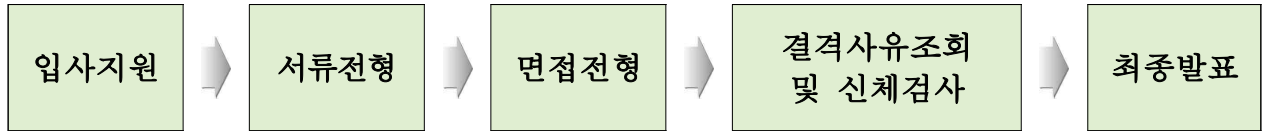
다.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인정하며**, 운전면허, 법규위반 경력, 교통사고 기간을 모두 전체로 입력하여 해당 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 **제출시기 및 방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제출 후 면접 당일 최종제출

IV. 전형절차 등

□ 전형절차 (각 전형단계별 독립적으로 합격자 선정)



□ 세부일정(안)

구분	일시	비고
채용공고	4.27.~5.12.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5.13.~5.20.	·적격심사 및 입사지원서 심사
서류전형 합격발표	5.23.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 선발
면접전형	5.27.	·인성 및 직무능력 심층면접 ·장소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면접전형 합격발표	6.02.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내 선발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6.03.~6.10.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검진 진행 후 최종발표
최종발표	6.16.	·채용 홈페이지 공지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변동 시 사전 공지 예정

○ 서류전형

가. 블라인드 위배사항을 배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나. 해당 응시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서류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다.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라. 불성실 기재자의 경우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1) 평가방법 : 1차 불성실 기재자 검증 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 불합격 기준(평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문맥상 공사명이 아닌 타기관명 오기재(ex) 'A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 “○○○○” “ㅋㅋㅋㅋㅋ” 등 무의미한 답변을 제출한 경우
- 분량 미달(항목별 40%미만)에 해당할 경우
- 그 외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감점 기준(해당 시 횡수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일괄 점수 차감(-3점))

- 공사 기관명 단순 오기재(단, 해당내용이 타기관명일 경우 불합격처리)
- 개인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ex) 장남으로서)

마. 서류심사 평가요소

구분	평가요소
교육사항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자기소개서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및 관계능력, 역량보유 여부, 자기개발능력
경력기술서	직무이해도, 업무성과 사례

○ 면접전형

가. 기초능력 및 인성, 태도, 자질 등에 대해 평가 후 합격자 선발

나.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하기 순으로 선발)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다. 면접전형 심사기준(심사표 별도 첨부)

평가내용	배점(100점)	과락기준
기본자세(태도)	20	면접점수 60점 미만 (가점제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성실성	2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직무역량)	20	
조직문화 수용성	20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 : 채용검진 실시

나. 결격사유조회 : 관계법령에 의한 적부평가

○ **예비합격자 운영**

가. 입사 포기 또는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습기간 중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해당사유 발생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예정.

나. 면접전형 불합격자 중 합격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최종발표 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후 개별통지

V.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이의신청 안내**

○ 목적 : 전형 간 불합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Q&A게시판

○ 이의신청 처리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개별회신

<예외사유>

가.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나.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다.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서류 반환안내 (붙임5)

- 온라인상 제출된 경우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면접전형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 대상자 : 면접전형 응시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면접전형 결과 발표 이후 14일 ~ 180일 내 신청

2) 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kobc2022.saramin.co.kr/>)

-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파기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진행됩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1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료 및 경력 허위 기재자, 부당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전형 종료 후 채용 홈페이지상의 안내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우리 공사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사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제출서류와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개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지원자가 사전요청 시 면접전형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안내

가.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나.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다.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내용의 작성금지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마. 제출된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채용 콜센터 운영안내

가. 채용 콜센터 : (시스템 구축 후 기입)
 나.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7시 30분(점심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제외)
 다. 가급적 채용공고문 및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 이외의 질문은 답변드리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

붙임2

응시자격기준

직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분야별 동시 충족)
기능직 (사원)	운전·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분야와 관련하여 총 환산경력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li style="padding-left: 20px;">*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임원차량(수행기사) 운전경력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서무·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환산경력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가. 총 환산경력 : 「공사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산정 후 경력(붙임3 참조)

나.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다.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적용 비율과 보훈 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자격미달로 판단함

붙임3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환산율	경력 내용
제1호	10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우리공사 근무기간 4.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 채용할 경우, 해당 자격증의 대표 직종에 종사한 근무기간
제2호	90%	제1호 외의 법인 또는 각종단체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3호	50%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근무 경력

- 가. 각종 경력환산에서 같은 환산요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입사지원 시 제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한다.
- 다. 법인 또는 각종단체의 파산·해체 등 제반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라. 증빙서류 제출 시 국외에서의 경력도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마.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 적용하며, 중복인정 하지 아니한다.
- 바. 상기표는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 경력환산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분	대상	서류전형			면접전형		
		3%	5%	10%	3%	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등록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력단절 여성	○					

○ 유의사항

- 가. 위 가점은 각 전형 별 만점의 40% 이상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상기 우대사항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
- 다.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라.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적용 비율과 보훈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가점 및 지원 자격 검토에서 제외됨
- 바. 전형단계별 가점기준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
- 사.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요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